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종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안 제36조)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II. 검토의견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 대한 휴·폐업 통보의무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자¹⁾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안 제29조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자²⁾에게까지 시·도지사 등에 대한

1)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휴·폐업 통보의무를 확대하는(제1항) 한편, 회원 및 이용자에게도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제3항 신설) 있음.

그러나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제19조제1항뿐만 아니라 제19조제2항에 따라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통보의무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도 부과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 제29조의 제1항 및 제3항의 통보의무 주체는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의미하는 “체육시설업자”³⁾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화 실)

2)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